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1049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1232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104993 판결

전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원호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에 반도체 재료 및 장비를 제조하여 납품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B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아래 표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06.17.	C	D	2021.06.17.	200,000,000원(200,000,000원)	이하 '제1보증계약', '제1대출금'이라 함
2016.06.17.	C	E	2021.06.17.	90,000,000원(100,000,000원)	이하 '제2보증계약', '제2대출금'이라 함
2017.03.15.	중소기업은행	F	2019.03.15.	630,000,000원(700,000,000원)	이하 '제3보증계약', '제3대출금'이라 함
2017.03.29.	중소기업은행	G	2025.03.31.	1,980,000,000원(2,200,000,000원)	이하 '제4보증계약', '제4대출금'이라 함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①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곧 갚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후 원고와 B은 제3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위 2019. 3. 15.에서 2020. 3. 13.로 변경하였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1) B은 2015. 6.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 12.경 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물품대금채무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B은 2019. 2. 1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2. 12. 접수 제738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B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3. 31. 접수 제20841호로 채권최고액 4,10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B은 이 사건 제3대출금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제4대출금에 관하여 2019. 6. 30.부터 각 이자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6.경 원고에게 B의 위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4 각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2) C은 위 신용보증사고를 알게 된 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19. 8.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2 각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9. 30. C에 이 사건 제1, 2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각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291,709,284원 [= 201,170,246원(이 사건 제1대출금의 보증한도액 이자 대출원금 200,000,000원 + 위 보증한도액에 관한 이자 1,170,246원) + 90,539,038원(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금 중 보증한도액 90,00,000원 + 위 보증한도액에 관한 이자 539,0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9. 10. 2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3, 4 각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3, 4 각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1,238,308,495원[= 637,294,536원(이 사건 제3대출금의 원금 중 보증한도액 630,000,000원 + 위 보증한도액에 관한 이자 7,294,536원) + 601,013,959원(이 사건 제4대출금의 보증한도액 내 원금 594,000,000원 + 위 원금에 관한 이자 7,013,959원)]을 대위변제(위 3),4)항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B에 대하여 취득하게 된 구상금채권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5)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반환보증료 반환채무를 2019. 9. 30.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였고, 위와 같이 상계하여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7,775,940원에서 47,516원을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 각 대위변제 당시 잔존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제1보증계약	201,170,246	1,296,980	199,873,266	355	199,873,621	7,728,424원
제2보증계약	90,539,038	648,490	89,890,548	177	89,890,725	
제3보증계약	637,294,536	1,715,670	635,578,866	470	635,579,336	
제4보증계약	601,013,959	2,328,800	598,685,159	638	598,685,797	

마. 임의경매로 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I(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앞으로 2020. 10. 26.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2020. 12. 9.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 중 170,339,284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0382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10. 30.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별지2 채권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2. 11.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 2018. 12.경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8년 회계기간(2018. 1. 1. ~ 2018. 12. 31.)동안 B의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당기손익은 -1,264,600,044원에 이른 반면, 2018. 12. 31. 기준 B의 자산총계는 8,477,813,283원으로 부채총계 8,442,438,658원 보다 고작 35,374,625원 가량 초과할 뿐이어서, 2018. 12. 31. 무렵 B의 재정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B의 재정 상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2. 11.경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6. 30.경 이 사건 제4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가 시작되었고, 2019. 7. 15.부터는 이 사건 제3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연체되기 시작하였다.

라) C이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할 무렵인 2019. 8. 9.경 B은 이미 영업 중지 상태였고, B의 대표이사는 C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보증사고 발생 당시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이미 영업을 중지한 상태에서 곧바로 폐업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B의 재정상 어려움이 보증사고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물)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액이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198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9. 2. 11. B에 대하여 이미 발생해 있던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2.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9. 9.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4,510,770,860원(=토지 1,971,500,000원 + 건물

2,539,270,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감정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2. 11. 무렵에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100,000,000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으로 근저당권자인 M유한회사의 배당액을 2,859,831,592원, 위 중소기업은행의 확정채권 일부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의 배당액을 648,416,754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수는 위 배당액을 하회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510,770,860원은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08,248,346원(= 2,859,831,592원 + 648,416,754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던 중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판결,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원

판사양지혜

판사권종현

별지